

새터 반성폭력 내규 시행

2001. 1. 29

발신: 13대 총여학생회

수신: 38대 중앙운영위원회

성폭력은 무엇인가

들어가며

성폭력 개념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풀어나가기 이전에 왜 다시 지루하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성폭력 개념을 꺼내는가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 같다. 예전에도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에게 던진 적이 몇 번 있었다. 당신은 '성폭력'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폭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강간'이었다. 강간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해자에 대해 '죽일 놈', '그런 놈들은 크게 혼내줘야 한다', '그런 놈들은 제적당해도 싸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으로 들어가보면 반응은 상당히 달라진다.

**양이 남긴 찝막한 유서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답답한 심정이 베어있습니다. **양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자살하기 1시간 전인 새벽 1시반, 김해시 구산동에서 택시를 탔다가 운전자 공모씨에게 장위면 부곡리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공모씨는 이양에게 다시 만나자면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 줬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 공모씨 :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아가씨가 드라이브하자 해 갔다.

최영태 기자 : 강간혐의로 긴급 체포된 공모씨는 추행은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양을 부검해 정액과 DNA검사 등을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삶 대신 죽음을 택한 이양의 선택은 정조 관념이 희박해진 요즘 세태에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김해에서 MBC뉴스 최영태입니다.

1997.9.11 MBC <뉴스데스크>

'수치스러운 삶 대신 죽음을 택한 이양의 선택은 정조 관념이 희박해진 요즘 세태에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이 MBC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은 사회에서 성폭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건이다. MBC의 보도에 따르면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폭력에 의해 자신의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라기 보다는 순결 혹은 정조를 빼앗긴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 여성일 뿐이다. 따라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자신이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유린당했던 자신의 육체와 성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되찾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삶 대신 죽음을 택함으로써 정조 관념이 희박해진 세태에 경종을 울려주어야 한다.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진리와 진보의 전당인 대학에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조금만 우리의 시야를 확장해보자.

흔히들 강간보다는 수위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강제추행이나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의 예를 들어

보자. 대학 내에서도 MT 장소에서나 자취집, 하숙집 등지에서 강제추행이나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등은 자주 일어나고 있고 많이 공론화되기도 했다.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강제추행이나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사건이 공론화 되었을 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여자가 행동을 어떻게 했길래', 혹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조금 과도하게 했나보지 뭐' 등이다. 또한 사건 자체에 대한 담론 뿐만 아니라 사건이 공론화되고 해결되는 과정에서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2중·3중의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몇 년 전 우리학교에서 술을 마시고 자취집에서 다 같이 자는 도중 신입생 남학우가 자고 있던 1년 선배 여학우의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과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처음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대책위가 꾸려지고 사건이 공론화되다가 공청회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세하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신분을 밝히면서 사건을 처리해나갔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와 같은 학년의 대부분 남학우들은 '1학년 새내기 인생 망칠 일 있느냐', '대충 좋은 쪽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피해자와 비상대책위의 요구는 너무 심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한다. 피해자에게 가해질 유형·무형의 비난과 수근거림들, 그리고 계속해서 따라다닐 '성폭력 당했던 여자'라는 꼬리표를 감수하고 성폭력의 경험을 자신의 신분과 함께 공론화한 결과는 바로 '남의 인생 망칠 일 있느냐'라는 동기들의 반응이었던 것이다.

과연 현재 우리는 무엇을 성폭력이라고 바라보고 있는가? 흔히들 너무나 당연히도 성폭력이라고 동의하는 강간의 경우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사건으로 들어가보면 결국 우리는 강간을 순결, 혹은 정조의 상실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피해자의 인권이야 어떻든 좋게잘게 처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일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질문을 하는 것으로부터 과연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폭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성폭력인가?

성폭력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

최근 몇 년 간 사회에서, 그리고 대학 내에서 여성운동 단위들을 중심으로 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정립된 성폭력의 개념은 바로 위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동의'와 '성적 자율권'이라는 말이다.

성폭력 판단 기준으로서 '동의'의 문제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적·제도적 인식은 실제로 성폭력이나 아니냐의 판단 기준을 피해자의 저항여부로 보고 있다. 강간죄에 대한 판례에서는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의 변호사는 피해자의 저항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근거로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한 손으로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을 세차게 흔드는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볼펜을 잡고 그 구멍에 넣으려고 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볼펜은 구멍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구성되지 못한다는 증거로 이러한 유치하기 짝이 없는 예를 든 것이다.

하지만 유치할지도 모르는 다른 상황을 한 번 가정해보자.

요즘 왕따 현상이 커다랗게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어느 고등학교의 한 반에도 역시 그 반 학우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한 학생이 있다. 그 반에서 힘도 세고 싸움도 잘 하는 몇몇은 지속적으로 왕따 학생을 불러다가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어낸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마련해가지 못하면 그 왕따 학생은 맞는다. 하지만 그 학생은 돈을 뜯어내는 학생들에게 대들지도 못하고 계속되는 협박 속에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간다.

이 상황에서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 폭력을 당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비록 왕따 학생이 돈을 뜯어내는 학생들에게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성폭력의 문제가 이렇게 명약관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성폭력이나 아니냐를 저항의 유무로 판별하는 것은 앞의 유치하면서도 단순한 예를 통해서 보았듯이 폭력의 피해자에게 다양한 기제를 통해 작동하는 권력을 깡그리 무시하지 않고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또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저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저항이어야 하는데 성폭력의 경우에 있어서 누구나 수궁할 수 있는 확실한 형태의 저항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힘들다.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가해자의 혀라도 깨물거나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상처를 가해자의 몸에 입히지 않는 한 어떻게 저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저항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조차 감수해야 하는 저항일 뿐이다.

어떤 폭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특히 성폭력의 경우에 성폭력이나 아니냐의 판단기준은 분명히 피해자의 동의 여부이다. 하지만 여기까지 동의가 된다고 해도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다시 앞에 가정했던 유치한 상황으로 돌아가보자. 돈을 뜯어내는 학생들이 왕따 학생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너 우리가 이러는데 불만있어? 어? 불만있으면 말해봐.” 하지만 왕따 학생은 아무 불만도 얘기하지 못한다. 그저 조그만 소리로 이렇게 말할 뿐이다. “아니오” 혹은 “아니”. 외견상 왕따 학생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동의를 한다. 이처럼 성폭력의 문제에 있어서도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 뿐만이 아니라 선배와 후배 사이의 권력, 교수와 학생 사이의 권력, 혹은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권력 등 다양한 권력관계가 중층적으로 얹혀 있을 때 암묵적인 압력과 강제 하의 동의를 과연 ‘자발적 동의’로 볼 수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강간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성폭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거나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목도하는 현상이다. 99년에 문과대 여성모임 ‘모반’에서 화장실 백지자보에 자신이 당한 성폭력 사례를 적어달라고 했을 때 수집된 성폭력 사례 중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

우연히 선배 오빠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 선배 오빠가 계속 옆에 있는 내 몸을 만지고 내 얼

굴을 만졌다. 그 당시에 나는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쉽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었다.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다.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다. 이 상황에서 후배인 여학우가 보인 행동은 외견상으로 볼 때 선배 오빠의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지도 모른다. '싫었으면 그 자리에서 싫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 상황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성폭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지만 그 여학우가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은 가해자가 선배라는 점, 친근감의 표시로 그러는 것일 텐데 내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또는 앞으로도 계속 마주칠 과 선배인데 싫다고 말했다가 괜히 관계가 서먹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굳이 'no means no!'라는 구호가 나올 만큼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no는 언제나 yes로 간주되며, 여성의 동의 혹은 비동의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점을 들지 않아도 성폭력의 판단 기준으로서 '동의' 여부는 남성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조건,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권력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가운데에서 세밀하게 사고되어야 한다. 동의는 종속적 지위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 여부에 있어서 피해자 주관의 문제

성폭력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일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주관이라는 말은 이제 학계에서, 여성운동 계에서 이미 정설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대학 내에서도 서서히 공유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성폭력으로의 규정에 있어서 판단지점이 되는 것이 피해자의 주관이라는 말은 동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피해자의 주관이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외견상 '동의'라는 동일한 형태를 띠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동의에서부터 암묵적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동의에 이르기까지 아주 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하에서 성폭력 사건이 있을 때 피해자가 동의를 했는지, 그리고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가 어떤 성격의 동의였는가를 판별하는 것은 피해자의 주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질문은 피해자의 주관이라는 성폭력 판단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객관적이지 않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우리는 과연 '객관'이 무엇이고 '주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객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법률에서 강간과 강제추행을 구분 짓는 기준은 여성의 질에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었는가의 여부이다. 얼핏 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 기준 속에서 여성의 질에 남성의 성기가 아닌 이물질이 삽입되었을 경우에는 강간보다는 수위가 약한 강제추행으로 규정되었으며, 요즘 들어 신고가 늘고 있다는 남성과 남성 간의 성폭력은 어떤 형태의 성폭력이라 할지라도 결코 강간으로 규정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이 권력관계가 내재되어 있는 친밀한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과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오히려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려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이 성폭력 당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가해질지도 모르는 2중·3중의 폭력, 그리고 피해자가 맺어왔던 공동체와의 단절 등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엄청난 용기를 필요

로 하는 행동이다. 더군다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거의 모든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만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성적 자율권의 침해

성적 자율권이라는 말을 짧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적 자율권의 침해는 성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성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것은 강간과 같은 물리적 성폭력에서부터 불쾌한 성적 농담과 같은 언어적 성폭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들은 보통 성폭력의 심각도를 강간과 같은 극단적인 것에서부터 성희롱과 같은 가장 경미한 것까지 구분짓는 경향이 있다. 물론 모든 성폭력 사이에 아무런 질적 차이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경험과 언어적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경험 사이에는 당연히 질적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성폭력의 심각도를 구분짓는 것에 경계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접근이 가장 극단적인 성폭력에만 논의의 초점을 집중시키며 피해자의 경험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폭력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때 흔히 보이는 반응인 '강간범 = 죽일 놈'의 도식은 강간이 아닌 다른 형태의 일상적이고도 무수한 성폭력들을 성폭력 담론에 있어서 배제시킴으로써 극단적인 형태의 성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성폭력에는 침묵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며 성폭력을 단순히 비도덕적이고 문제 있는 몇몇 개인의 문제로만 환원시킨다. 집에 가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일상적으로 당하는 성폭력, 수업시간에 들려오는 교수의 성폭력적 발언, 선배나 동기들에 의한 성폭력적 발언 등의 흔히 말하는 경미한 성폭력들은 강간과 같은 극단적인 성폭력과 전혀 다른 맥락 위에 서있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전혀 경미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주는 영향은 매우 복잡적이며, 피해자가 경험하는 성폭력의 형태로부터 간단하게 해석될 수 없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의의와 방향성

1. 연세 내의 상황과 새터라는 공간

1.1. 연세는 성폭력 안전지대?

99년 정도까지만 해도 연세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신고되거나 공개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연세는 다른 대학들에 비해 성폭력에 관한 한 높은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므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성폭력에 반대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쉽사리 이의를 제기하고 나설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그러나 연세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을 볼 때 그러한 동의가 대부분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 구체적인 현실로 연결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경우가 해자들은 자신이 한 언행을 성폭력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주변에서 사건을 전해 듣거나 공개된 성폭력 사건을 접한 학우들의 경우, '비상한 관심'을 보이기는 하나 그이상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반응은 여전히 성폭력을 강간이나 성추행정도만으로 좁게 사고하고 있음을 드

려내준다. 따라서 성폭력은 한 개인의 도덕적 타락 정도로 치부되며 '성폭력 가해자=파렴치범'이라는 낙인이 부여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학우들이 관심을 가지기는 하지만 더 이상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성폭력은 은밀하고 선정적인 것이며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연세 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은 한국 사회 일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신고되지 못하고 공론화되지 못했던 것은 연세 내에서 성폭력이 실제로 없었다기 보다는 피해자가 성폭력의 경험을 안전하게 풀어내고 지지받을 공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겪었던 혹은 겪고 있는 불쾌하고 두려운 경험을 성폭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면서 점차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성폭력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음을 목도하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성폭력 사건을 드러냈을 때 벌어질 상황¹⁾에 대한 두려움으로 묻어두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성폭력의 경험들을 드러내고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하며 그를 통해 성폭력을 예방하고 우리의 일상 곳곳에 존재하는 성폭력적인 문화에 문제제기 해야 한다. 이러한 방편의 하나로 우리는 자치규약 형태를 띤 새터 반성폭력 내규 시행의 필요성을 생각할 수 있다.

1.2. 왜 새터인가

굳이 새터라는 공간을 주목하는 이유는 새터라는 공간이 특수하면서도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새터는 대동제 등과 더불어 일년에 몇 안되는, 다수의 학내구성원들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행사이며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만나는 장이다. 또한 새내기들은 새터를 통해 새로운 학내 구성원으로서 대학 문화를 접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신입생 수련회는 일정한 장소에서 며칠 간 함께 생활한다는 점에서 혼치않은 공간이다.

새터에서는 공동체의 대동단결이 지나치게 강조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들뜬 분위기가 되기 쉽다. 또한 여학우와 남학우들이 동료로써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공유한 경험이 이전에 별로 없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나 배려도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새터가 매년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지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새터 문화는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다. 매년 반복되는 비슷한 프로그램들이나 게임, 응원 등으로 채워지는 놀이문화, 과음과 난동으로 이어지기 십상인 뒷풀이 등 새터 문화는 거의 변함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터에서는 다양한 성폭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남자 선배들이 여자 새내기들을 '술 따르는 여자' 정도로 취급하는 등의 언어적 성폭력부터 초벌 혼극 등에서 흔히 일어나는 여성배제적인 집단적 성폭력, 그리고 원치 않은 신체접촉과 같은 물리적 성폭력까지 수많은 성폭력들이 '친밀감' 혹은 '공동체의 유회를 통한 결속력 강화' 등의 미명아래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새터 시기에는 성폭력의 발생빈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성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한다고 해도 새내기의 입장에서 문제제기 하기가 쉽지 않다²⁾. 새터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새터 시기에 일어나는

- 1) 많은 경우 피해자들은 자신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임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은 사건으로 인해 겪는 정신적, 물리적 고통 이외에도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이나 사후에 많은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비난은 성폭력이 여전히 정조의 문제로 사고되는 사회적 인식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논리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성폭력 사건이 해결된 이후 가해자가 공동체 내에서 동정을 받거나 당당하게 생활하는 반면 피해자는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다.

성폭력과 그로 인해 드러나는 왜곡된 성문화에 대응하고 이를 예방할 구체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새터 내규의 의의

2.1. 학내 성폭력 담론의 활성화와 여성주의적 재구성

성폭력이 단지 개인의 도덕성에 기인한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왜곡된 성문화와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학습해 온 성의식에 의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단순히 '성폭력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단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억압과 불평등에 의한 성폭력의 문제에 대해 학내의 인식 지반을 넓혀 나가기 위해 존재한다. 이에 우리는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준비하고 시행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학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논쟁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담론을 함께 구성해나가야 한다.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성폭력에 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인식 수준은 피상적인 동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성폭력의 문제는 사적인 문제이므로 공적인 장에서 거론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는 인식도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성폭력을 선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피해자 여성의 성적 자율권 침해라기보다는 정조의 상실로 보는 태도, 여성의 경험이나 언어가 배제된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성폭력 담론 역시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남성중심적이고 억압적인 성폭력담론을 해체하는 동시에 여성주의적인 담론으로 재구성해나가야 한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에 대한 논의와 시행과정을 통해 학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고 성폭력 담론을 재구성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2.2. 성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작년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시행 상황을 보면 새터 반성폭력 내규가 있음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새터 참가자들이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공동체 성문화 혹은 개인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되돌아 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폭력이 일어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새터 기간에 성폭력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를 입은 학우들에게는 자신이 당한 성폭력 사실을 접수하고 해결해 나갈 통로나 장치가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줌으로써 일종의 신뢰감을 줄 수 있다.

기간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정을 볼 때 책임 단위의 부재, 해결하는 단위의 교양 및 준비 부족, 성폭력 사건 해결의 경험 단절 등은 성폭력 사건 해결에서의 미숙함으로 이어졌다. 또한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성폭력 경험이 사장되기 쉬운 현실에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급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성폭력 사건 해결의 경험을 축적하고 사건 해결의 통로를 어느 정도 일원화하여 책임있고 올바르게 사건을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

-
- 2) 새터 때 주로 일어나는 환경형 성폭력 혹은 집단적 성폭력은 선후배 간에 존재하는 권력관계 등으로 인해 새내기 입장에서 쉽게 문제제기하기 힘들다. 또한 대학문화는 진보적이고 자유로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인해 자신이 겪는 불편이나 자신의 언행을 성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거나 묻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2.3. 대학 사회 자치 실현의 과정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자치 규약의 하나로 대중적 논의에 기반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건설함을 목표로 한다. 자치규약운동은 학생 공동체 내부의 자치질서를 구성하기 위해 존재하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반성폭력 자치규약을 가져나감으로써 우리는, 스스로가 지금까지 성폭력적 구조를 방관 혹은 용인해 왔으며 의식하던 하지 못했던 간에 사회적 성폭력을 체현해 왔음을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모두가 사회적 성폭력의 담지자임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반성폭력 자치규약운동은 성폭력에 관한 여성적 담론을 현실에서 구현하고 그것의 가능성을 증명하며 우리 삶을 바꾸어나가는 운동이 된다. 이는 또한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며 반성폭력 자치 규약을 통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자발적 문제 해결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반성폭력 자치규약운동은 제정 자체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인 운동이며, 스스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을 근절하고 대안적인 문화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운동이다.

3. 2001년 새터 반성폭력 내규 시행의 방향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제정되었다고 끝나는 사업도, 또다시 새터 시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해야하는 사업도 아니다. 반성폭력 자치규약운동은 학내의 성문화를 새롭게 구성한다는 목표를 두고 진행되는 운동이므로 한번의 드러나는 성과에 연연하기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올해 새터 내규의 방향성은 작년 새터 내규 제정과 시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3.1.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안착화시키자.

올해는 새터 반성폭력 내규 시행 2년째를 맞이하게 되므로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안착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안착화는 새터 내규의 필요성을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학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여성들이 자신들이 느끼는 불편하고 두려운 경험을 성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드러내고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공동체 내의 성폭력적인 문화에 대해 거리낌없이 문제제기할 수 있고 일상 속에서 그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안착화는 연세 학생사회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동의와 대중적인 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럴 때에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상명하달식으로 전달되어 소극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제가 아닌,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켜내는 진정한 자치규약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3.2.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계기로 성폭력에 대한 논의를 각 단위의 실정에 맞게 풀어내도록 하자.

사실 전 학교 차원에서 반성폭력 자치규약을 실시하게 되면 자치(스스로 논의하고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지킨다)의 의미는 탈각되기 쉽다. 또한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각 단위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자치규약은 단위의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자치규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사문화되지 않고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자치규약의 의미가 자치단위 구성원의 삶과 생각들을 능동적으로 이야기하고 바꿔 가는 것에 있으므로, 자치규약은 실상 작은 규모의 단위에서 만

들어질 때 그 의미를 보다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반 단위에서 반성폭력 자치규약을 제정하기 힘들므로 여전히 전 학교 차원에서 반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의 의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전 학교 차원의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 단위에서 단위 실정에 맞게 성폭력에 대한 논의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단위마다 특수한 상황과 환경이 있으므로 학교 전체적으로 일률적인 교양이나 논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에서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 공동체 내의 성문화를 성찰하고 바뀌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새터 反성폭력 내규 평가

1. 작년 왜 그리고 어떻게 새터 내규를 만들게 되었나?

1.1. 새터 내규 제정의 의의

우선 새터 내규가 제정됨으로서 지난 몇 년간 연세 학내를 비롯해 여러 여성단위에서 지속적으로 펼쳐 왔던 반성폭력 운동이 단지 문제제기나 논쟁에 그치지 않고 성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물적인 방안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을 떼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새터 反성폭력내규의 제정은 새터 시기의 성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새터가 신입생들이 처음으로 대학 문화를 접하는 장(場)이며, 성폭력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신입생들이 다수 존재하고, 신입생 수련회의 경우 며칠동안 외부와 격리된 공간에서 생활을 한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특수성에 기반해서 신입생들이 처음 대학 문화를 접할 때부터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성폭력 담론에 대해 급진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연세 학생사회에서는 새터 내규를 채택했다.

작년의 특수성 중 하나는 당시 학교측에서 일방적인 반성폭력 학칙제정 움직임이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서 학생들이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힘이 있음을 학교측에 보여주어야 할 상황이었다. 이것은 학교측에 학생들의 힘을 보여줌과 동시에 학생사회 내부 자치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동시에 실천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1.2. 제안에서 제정까지

작년에 새터 내규를 준비하면서 특히 어려웠던 점은 방학 기간에 전 연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터 내규를 만들고, 제정하고 그 모든 과정을 연세인과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작년의 제정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연세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에서 내규 초안을 작성하고, 중운위에서 검토를 거쳐 1월 말 확대일꾼수련회에서의 공청회, 2월 임시비상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이 되었다. 현실적으로 내규를 연세인 전체가 모여서 만들 수 없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중운위와 교양학교, 확대 간부 수련회 등을 십분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연세인들의 합의를 끌어내려 했다. 그러나 단위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정하는 자리였던 확운위에서조

차도-학생회 직선 간부들로 이루어진 자리에서-기본적인 질문들이 튀어나왔다는 것은 그 한 예가 될 수 있겠다.

2. 제정 이후 홍보, 집행, 새터 이후 사건 해결까지

제정 이후 토론용 자료집, 내규 포스터(신입생 수련회에서 방마다 부착했던), 새내기 용 소책자, 자보, 통신, 새터 성폭력 모니터링 팀 모집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양 작업이 이루어졌다. 각 단위별로는 신입생 수련회 자료집에 내규 안을 넣기도 하고, 내규 공유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규를 공유하려 했던 것에 비하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것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지 않았던 문제도 있었지만, 내규를 홍보하고 공유의 노력을 해야 했던 주체들 역시 고민이나 교양, 활동이 부족했다는 문제도 크다. 한편 다른 어떤 방법들보다 신입생 수련회에서 방마다 부착했던 포스터가 여러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우선은 모두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 강점이었고, '강압적이다'라는 반응도 많았지만(대개 남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고, 짧게라도 새터 내규나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 할 기회를 직접적으로 만들어주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내규의 의미나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여자들도 공감하지 못하거나 내규가 희화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이나 준비가 없었다는 문제가 있다. 새터 기간 이후 한 건 신고가 들어 왔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제대로 해결이 나지 않았다.